

# [ 변경 대비 표 ]

## ■ 변경 집합투자기구 및 변경 서류

편 드 명	BNK K200지수 2배레버리지증권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
변 경 서 류	집합투자규약
변 경 사 유	-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 - S클래스 판매보수 인하(0.3%→0.24%)
효 력 발 생 일	2025년 07월 10일

## ■ 변경대비표

항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사항 반영	①~② (생략)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1~6. (생략) 7. Class S 수익증권 : <u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</u>	①~② (현행과 동일)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1~6. (현행과 동일) 7. Class S 수익증권 : <u>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수익증권(종류S-T 및 S-P 수익증권 포함)를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 수익증권(가입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)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,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</u>
제20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	오기정정	① 다음 --(생략)--한다. 1~2. (생략) 3.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(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) 4~5. (생략) ②~④ (생략)	① 다음 --(현행과 동일)-- 한다. 1~2. (현행과 동일) 3.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(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) 4~5. (현행과 동일) ②~④ (현행과 동일)
제39조(보수)	S클래스 판매보수 인하	①~② (생략)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	①~② (현행과 동일)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

		<p>액으로 한다.</p> <p>1.~6. (생략)</p> <p>7. Class S 수익증권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4.45</p> <p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<b>3.00</b></p> <p>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0.35</p> <p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0.20</p>	<p>액으로 한다.</p> <p>1.~6. (현행과 동일)</p> <p>7. Class S 수익증권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4.45</p> <p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<b>2.40</b></p> <p>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0.35</p> <p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0.20</p>
<부칙>		<신설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 부 칙 9 &gt;</u></p> <p>(시행일) 이 투자신탁은 2025년 07월 10일부터 시행한다.</p>

<끝>